



999999

과다지급액 결정

우송일: 9999 년 99 월 99

SUSAN DOE
111 NORTH 10TH STREET
SILER CITY, NC 27344

일 청구인 ID: xxxxxxxx

과다지급액 결정

쟁점 ID: < ID>
청구인 ID: :XXXXXXX

귀하의 청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귀하는 권한이 없는 실업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. **본 급여의 과다지급이 발생한 것은 귀하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고 급여 수령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전 결정의 반복 때문이었습니다. 본 과다지급 결정은 항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** 본 과다지급 결정이 최종 효력을 갖기 전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의 자격 상실 및/또는 실격을 판결한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. 항소장 제출 절차와 기한은 결정과 함께 우송된 팸플릿에 기술됩니다.

과다지급액: <과다지급액>
과다지급 최초 주: <과다지급 최초 주>
과다지급 최종 주: <과다지급 최종 주>

과다지급액의 회수

N.C. Gen. Stat. § 96-18(g)(3)에 따라 동 국은 아래 절차에 따라 과다지급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급여 상계

과다지급액은 향후 귀하에 지불되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과다지급액이 변제되거나 귀하의 권리가 소진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 월 급여액 중 최대 50 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세금 상계:

동 국은 연방 세금 환급, 주세 환급 또는 복권 당첨금을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.

과다지급의 유보

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 국은 사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다지급액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. 귀하는 1 회에 한하여 본 과다지급의 유보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귀하의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 귀하의 요청을 입증하는 증빙 또는 서류 일체를 동봉해야 합니다. DES 는 과다지급을 초래한 판정에 대해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심의하지 않습니다. 유보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항소 제출권이 포기됩니다.

